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721호 2023. 1. 2.(월)

## 차 례

### 훈 령

-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————— 1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665호선)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————— 10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————— 12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————— 16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 ————— 22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호 석남동529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— 25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호 공인 폐기 공고 ————— 26
-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————— 29



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청원심의 원칙) 「청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심의회 심의사항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
2.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
3.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「청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(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, 3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구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② 심의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처리부서의 담당 실·국·소장으로 한다.

③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청원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제7조(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8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
5.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6.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

제9조(위원장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,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심의회 운영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,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4.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

제11조(심의회 개최요구)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,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제12조(자료 제출 등)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

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,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3조(비밀준수 의무)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.

제14조(간사)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또는 실무자로 한다.

②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.

제15조(수당)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,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·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지 제2호 서식]

**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**(제11조제3항 관련)

안 건	
일 시	년    월    일
심 의 결 과	

**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위원**

구 분	성 명	심 의 의 견			서 명
		찬성 (심의결과 동의)	반대 (심의결과 반대)	비고	
위원장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


[별지 제4호 서식]

### **출석통지서**(제12조제4항 관련)

<b>출석부서</b>	
<b>출석이유</b>	
<b>출석일시</b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     시</p>
<b>출석장소</b>	
<b>유의사항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li>2.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.</li> </ol>
<p>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인천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위원장</b>      (서명 또는 인)</p> <p>○○○ 귀하</p>	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1호

##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3-665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
인천광역시고시 제2021-189호(2021. 6. 28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【도로: 중로3-665호선, 사업명: 인천 가정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로3-665호선 개설공사】 사업을 시행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계획과, ☎032-560-4763)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23. 1. 2.  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7-2번지

###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)
- 명칭: 인천 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 3-665호선 개설공사

###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연장(m)				면적 (㎡)
				결정	금회	결정	기시행	금회	잔여	
도로	중로	3	665	12	12	310	298	12	-	159.5

###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- 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(충무공동)

### 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- 실시계획 인가일 ~ 2023. 6. 30.

###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 관계	
계				1,858.9	159.5						
1	가정동	647-2	대지	159.5	159.5	한국토지 주택공사	진주시 충의로 19 (충무공동)	-	-	-	중로 3-665 호선

### 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	중로	3	665	12	국지 도로	310 (12)	대로3-111 (가정동177-8)	대3-111 (가정동633)	일반 도로	-	인천고시248 (20.6.29.)	-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3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,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2023. 1. 2.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변경·폐지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로 6 외 10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·폐지)사유 별도 열람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1.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3-1-2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45-3	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로 6 (원창동)	20090922	자연무작위일자 점 이름을 따 명명	세어도항 대합실
2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26-3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5번길 15-1 (마전동)	20081231	마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광역시 서구 연석동 211-3	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571 (연석동)	20090710	계양산과 천마산사이 절령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절령이고개의 한자표기말인'경명'명칭에서 부여	하이넷 인천연석 수소충전소
4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3-2	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13 (청라동)	20110630	크리스탈로 시작점부터 약 74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주민의견 반영	
5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-3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00번길 20 (청라동)	20110630	경관특성화계획에 의거 사파이어존의 형에서 착안, 형색의 내반배 도로로 부여	
6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-28	인천광역시 서구 목항단지로123번길 12 (원창동)	20200720	목항단지로 시작지점으로부터 1,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24-44	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70 (원창동)	20090922	옛날 청라도가 파랗게 물러,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	
8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51-20	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81번길 19 (오류동)	20200720	반월로 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함 도로	
9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-70	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70 (청라동)	20101111	청라대로 동쪽에 위치	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3-1-2

연번	도로명주소		도로명주소 변경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			
1	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282번길 16-8 (가좌동)	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282번길 16-7 (가좌동)	오류 정정	20090706	열우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,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3-1-2

연번	도로명주소	폐지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125 (왕길동)	전용 말소	20150806	강인 아래갯길(수로)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무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	첫당이고물상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4호

## 하천 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시행령 제38조(하천점용허가의 고시)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. 2.  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공촌천(지방하천)

가. 하천의 명칭 : 공촌천(지방하천)

- 1) 허가 번호 : 제 2022 - 18호
- 2) 허가년월일 : 2022. 12. 19.

나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성 명 : 티에스케이\*\*\*\*\*
- 2) 주 소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\*\*\*

다. 점용의 목적 및 개요 : 지반조사

라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- 1) 위 치 : 인천 서구 경서동 124-135
- 2) 면 적 : 18m<sup>2</sup>

마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: 2022. 12. 19. ~ 2022. 12. 31.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4호

## 하천 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시행령 제38조(하천점용허가의 고시)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. 2.  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2. 공촌천(지방하천)

가. 하천의 명칭 : 공촌천(지방하천)

- 1) 허가 번호 : 제 2019 - 9호
- 2) 허가년월일 : 2022. 12. 26.

나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성 명 : 대한송유관공사(\*\*\*\*)
- 2) 주 소 : 경기도 고양시 중앙로 \*\*\*

다. 점용의 목적 및 개요 : 송유관 시설 매설

라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- 1) 위 치 : 인천 서구 공촌동 293-1외 3필지
- 2) 면 적 : 25.74m<sup>2</sup>

마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4호

## 하천 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시행령 제38조(하천점용허가의 고시)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. 2.  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3. 공촌천(지방하천)

가. 하천의 명칭 : 공촌천(지방하천)

- 1) 허가 번호 : 제 2019 - 13호
- 2) 허가년월일 : 2022. 12. 26.

나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성 명 : 대한송유관공사(\*\*\*\*)
- 2) 주 소 : 경기도 고양시 중앙로 \*\*\*

다. 점용의 목적 및 개요 : 지중 송유관 시설 보호

라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- 1) 위 치 : 인천 서구 연희동 42-11
- 2) 면 적 : 2.64m<sup>2</sup>

마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4호

## 하천 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시행령 제38조(하천점용허가의 고시)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. 2.  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4. 대곡천(지방하천)

가. 하천의 명칭 : 대곡촌(지방하천)

- 1) 허가 번호 : 제 2019 - 3호
- 2) 허가년월일 : 2022. 12. 29.

나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성 명 : 한국전력공사(\*\*\*\*)
- 2) 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\*\*\*

다. 점용의 목적 및 개요 : 전력공급용 전주 2본

라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- 1) 위 치 : 인천 서구 대곡동 687-4
- 2) 면 적 : 0.392m<sup>2</sup>

마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4호

## 하천 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시행령 제38조(하천점용허가의 고시)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. 2.  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5. 나진포천(지방하천)

가. 하천의 명칭 : 나진포천(지방하천)

- 1) 허가 번호 : 제 2022 - 3호
- 2) 허가년월일 : 2022. 12. 29.

나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성 명 : 한국전력공사(\*\*\*\*)
- 2) 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\*\*\*

다. 점용의 목적 및 개요 : 전력공급용 전주 4본

라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- 1) 위 치 : 인천 서구 불로동 110-5, 133-4, 대곡동 455-14, 453-22
- 2) 면 적 : 0.504m<sup>2</sup>

마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4호

## 하천 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시행령 제38조(하천점용허가의 고시)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. 2.  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6. 공촌천(지방하천)

가. 하천의 명칭 : 나진포천(지방하천)

- 1) 허가 번호 : 제 2022 - 19호
- 2) 허가년월일 : 2022. 12. 29.

나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성 명 : 인천환경공단 (\*\*\*\*\*)
- 2) 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장도로 \*\*\*

다. 점용의 목적 및 개요 : 강우 시 미처리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

라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- 1) 위 치 : 인천 서구 연희동 555-3
- 2) 면 적 : 2.88m<sup>2</sup>

마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: 2022. 12. 19. ~ 2027. 12. 18.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5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
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. 2.  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
가. 허가 번호 : 제2019 - 13호  
나. 허가년월일 : 2022. 12. 29.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차량 진출입로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인천 서구 오류동 875-11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  
가. 면 적 : 9m<sup>2</sup>  
나. 기 간 : 2023. 1. 1. ~ 2024. 12. 31.
5. 점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
가. 성 명 : 김\*\*  
나. 주 소 : 인천 연수구 독배로 \*\*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5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
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. 2.  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
가. 허가 번호 : 제2020 - 5호  
나. 허가연월일 : 2022. 12. 29.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전력공급용 전주 2기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인천 서구 오류동 875-5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  
가. 면 적 : 0.192m<sup>2</sup>  
나. 기 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
5. 점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
가. 성 명 : 한국전력공사(\*\*\*\*\*)  
나. 주 소 : 인천 서구 청라커널로 \*\*\*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-5호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
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. 2.  
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
  - 가. 허가 번호 : 제2019 - 5호
  - 나. 허가연월일 : 2022. 12. 29.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전력공급용 전주 2기
3. 점용·사용의 장소 : 인천 서구 대곡동 727-32
4. 점용·사용의 면적 및 기간
  - 가. 면 적 : 0.588m<sup>2</sup>
  - 나. 기 간 : 2022. 1. 1. ~ 2025. 12. 31.
5. 점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
  - 가. 성 명 : 한국전력공사(\*\*\*\*\*)
  - 나. 주 소 : 인천 서구 청라커널로 \*\*\*\*\*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-2호

## 석남동529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
우리 구 석남동 52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. 2.  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석남동529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9번지 외 36필지

나. 구역면적 : 9,167.3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가. 착수 예정일 : 2022.12.12.

나. 준공 예정일 :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가. 조합의 명칭 : 석남동52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
나. 사무소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6-6번지, 3층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-3호

## 공인 폐기 공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. 2.
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공인 폐기 사유 : 자동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폐기
2. 공인 폐기일 : 2023년 1월 2일
3. 폐기 공인명 및 인영 : “별첨” 참조

## 폐기 공인 목록

연번	공인명	종류	규격	폐기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서구경찰서동장인 / 민원전용3 (인증기)	기관장인	2.1cm x 2.1cm	자동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폐기	

## □ 폐기 공인 내역

등록공인명	폐기사유	폐기일자	인 영
인천광역시서구검암경서동장인/ 민원전용3 (인증기)	자동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폐기	2023년 1월 2일	

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 2023-1호

##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

『국민건강증진법』 제9조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.

2023. 1. 2.

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

### 1. 지정취지

공동주택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,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# 2. 지정내용

- 공동주택 명 칭 : 루원시티SK리더스뷰
- 공동주택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37
- 금연구역 지정번호 : 제 55호
- 금연구역 지정범위(전체) :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
- 금연구역 지정일자 : 2023년 1월 2일

### 3.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

- 단속 개시일 : 2023년 4월 2일부터
- 과태료 금액 : 5만원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(☎032-718-05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